

주주여러분께

신주발행 및 신주배정기준일 공고

신주발행공고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25년 07월 16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 다 음 ---

■ 유상증자 신주 발행의 건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1,000,000주 (1주당 액면가액 : 500원)
2. 신주의 발행방법 :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3. 자금조달의 목적 : 운영자금
4. 신주의 발행가액 : 29,050원(최초 이사회 결의전 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예정가액이며, 향후 주가 변동에 따라 예정 발행가액과 확정 발행가액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1) 예정 발행가액은 2025년 07월 16일 성립된 최초 이사회의 직전 거래일(2025년 07월 15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나눈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증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증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text{예정 발행가액} = \frac{[\text{기준주가} \times (1 - \text{할인율})]}{[1 + (\text{증자비율} \times \text{할인율})]}$$

- (2)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 3 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증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증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1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text{1차 발행가액} = \frac{[\text{기준주가} \times (1 - \text{할인율})]}{[1 + (\text{증자비율} \times \text{할인율})]}$$

- (3) 2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일 전 제 3 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증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증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2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 (4)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제 165 조의 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5 조의 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구주주 청약일전 과거 제 3 거래일부터 제 5 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 3 거래일부터 제 5 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 전 과거 제 3 거래일부터 제 5 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5. 신주의 배정기준일 : 2025년 09월 02일 (예정)

6. 신주의 배정방법

- (1) 구주주 청약은 신주배정기준일(2025년 09월 02일 예정)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0872045770주를 공급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주식매수선택권의 권리 행사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 초과청약은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 (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합니다.)

(가)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나)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다)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 (3) 일반공모 청약은 상기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이하 "일

반공모 배정분”)는 “대표주관회사”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6호 가목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공모주식의 10%를 배정하며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7항에 해당할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자산총액의 100분의 20(공모의 방법으로 설정·설립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은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공모주식을 배정합니다. 이 경우 자산총액은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6호 나목에 따라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25%를 배정합니다. 나머지 65%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 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배정 수량 계산시에는 청약사무 취급처에 청약된 청약주식수를 모두 합산하여 동일한 배정비율로 통합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공모주식 10%와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25%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6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따라 어느 한 그룹만 청약 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 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가)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수량 계산시에는 “대표주관회사”의 “청약물량”(“대표주관회사”의 청약처에서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주식수를 의미합니다)을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로 나눈 청약경쟁률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의 각 청약자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나)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시 “대표주관회사”의 “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다만,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공모주식 10%와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25%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포함)에 대한 공모주식 6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어떤 그룹에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합니다.

(다) “대표주관회사”의 “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당사와 “대표주관회사” 간의 잔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 계산으로 인수하기로 합니다.

(라) 단,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의 수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

7. 신주의 청약증거금 : 청약금액의 100%
8. 신주의 청약기간
 - (1) 구주주의 청약기간 : 2025년 10월 16일 ~ 2025년 10월 17일 (2일간)
 - (2) 일반공모의 청약기간 : 2025년 10월 21일 ~ 2025년 10월 22일 (2일간)
9. 주금납입일 : 2025년 10월 24일
10. 주금납입처 : 신한은행 여삼동금융센터
11.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5년 01월 01일
12. 신주 상장예정일 : 2025년 11월 07일
13. 대표주관회사 : 한국투자증권(주)
14. 청약사무 취급처
 - (1) 구주주 중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의 본·지점 및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 (2) 구주주 중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 :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 (3) 일반공모 청약자 : "대표주관회사"의 본·지점
15.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 (1)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 2025년 09월 23일 ~ 2025년 09월 29일 (5영업일)
 - (2)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를 중개할 증권회사 : 한국투자증권(주)
16. 기타사항
 - (1)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전자공시하며,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개별 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합니다.
 - (2)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습니다.
 - (3)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하며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 (4)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5) 기타 신주발행에 대한 세부사항의 결정 및 집행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합니다.

신주배정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에 의거, 상기 신주발행에 따른 권리주주확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유상증자 신주 발행의 건

1. 신주의 배정기준일 : 2025년 09월 02일 (예정)
2. 명의개서 정지기간 : - (*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라 명의개서 정지기간은 없습니다.)

2025년 07월 17일

주식회사 코난테크놀로지
대표이사 김 영 섭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